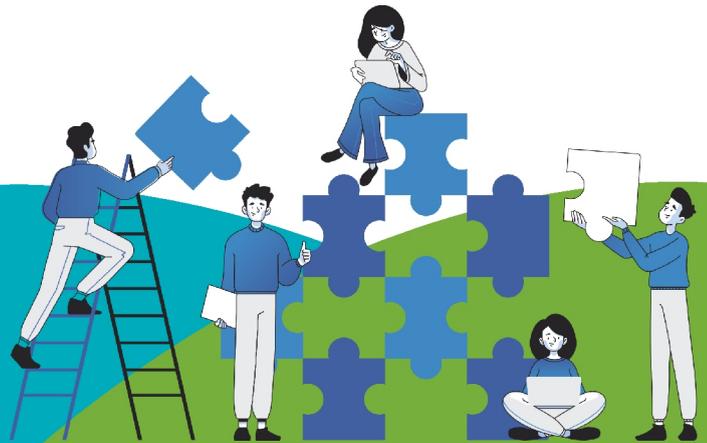


시민이 주인인 원주!  
시민이 행복한 원주!

# 2021 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원주시고충처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가 2009년 출범한 이후 금년에 열두 번째 운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에는 청렴한 기운이 불어왔고, 공직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많은 노력으로 기존과는 사뭇 달라진 신뢰도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행정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부당하다는 하소연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야기된 고충민원의 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의견표명, 개선 권고, 조정·합의를 통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었으며, 2021년 한 해 100건 이상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해소하였음은 물론, 행정의 적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자평합니다.

지금의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는 타 자치단체 및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강 응 만



# 목 차

## I. 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

1. 도입배경 및 주요연혁 / 3
2. 구성현황 / 5
3. 기능 및 권한 / 7
4. 주요활동 / 8
5. 주요활동 사진 / 9
6. 민원 처리절차 / 12
7.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15

## II. 주요 고충민원 접수·처리 사례 / 21

## III. 부록

1. 전국 지방음부즈만 운영 현황 / 37
2.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법규 / 39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 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라.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 보고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 7. 20.부터 2021. 7. 19.까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을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I

## 위원회 구성 및 주요활동

1. 도입배경 및 주요연혁
2. 위원회 구성현황
3. 위원회 기능 및 권한
4. 위원회 주요활동
5. 위원회 주요활동 사진
6. 민원 처리절차
7.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1

## 도입배경 및 주요연혁

## 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도입배경

-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법령정비 미흡, 행정편의주의적 처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부분과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민원을 간소화 절차와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하고자 고충처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한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① 주민권익 구제기능 ② 분쟁 해결기능 ③ 행정서비스 개선기능 ④ 시민과 행정기관의 대화창구 기능을 할 수 있다.
- 옴부즈만은 스웨덴에서 최초로 1809년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이래 보편적 국민권익구제체도로 자리를 잡았는데 대표적인 지방특수 옴부즈만은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공공서비스 옴부즈만」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종의 중앙정부 옴부즈만 제도이고,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1996. 1), 부천시(1997. 5), 목포시(2008. 4), 익산시(2008. 9), 안양시(2009. 2), 정읍시(2009. 4)에 이어 전국 일곱 번째, 강원도에서는 첫 번째로 (2009. 7) 고충처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 기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21년 10월 현재 6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 나. 주요 연혁

- 설치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 ○ 위원회 설치

- ▶ 조례 제정: 2008. 12. 31.
- ▶ 위원 위촉(제1기): 2009. 7. 15.
- ▶ 시행규칙 제정: 2009. 7. 17.
- ▶ 사무실 개소(시청 9층): 2009. 7. 20.
- ▶ 위원 위촉(제2기): 2013. 7. 15.
- ▶ 위원 위촉(제3기): 2017. 10. 13.
- ▶ 위원 위촉(제4기): 2018. 12. 12.
- ▶ 위원 위촉(제5기): 2021. 10. 13.

### ○ 역대 위원장

구분	성명	직업	활동기간
1기	김종현	연세대학교 교수	2009.07.15. ~ 2013.07.14.
2기	김태우	연세대학교 교수	2013.07.15. ~ 2017.07.14.
3기	이희	(전)서울시 동작구청 부구청장	2014.12.12. ~ 2018.12.11.
4기	유오종	한라대학교 교수	2017.10.13. ~ 2021.10.12.
5기	강응만	(전)원주시청 환경복지국장	2021.10.13. ~ 현재

## 2

## 위원회 구성 현황

## 가. 조직 현황

- 합의제 위원회: 7인 비상근위원으로 운영
- 성 격: 원주시 소속 행정기관 및 원주시의회와 독립하여 직무수행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무기구: 2명(공무원 1, 전담 상담원 1)
- 근무형태: 상담원 상시 근무

## 나. 위원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 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다. 위원 임기

- 임기는 4년으로 연임 불가
-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위촉, 후임의 위원 임기도 4년 보장

## 라. 위원 소개

직 위	성 명	직 업	위 촉 일
위 원 장	강 응 만	(전)원주시청 환경녹지국장	2018.12.12.
부위원장	박 인 광	건축사사무소 대원 대표	2021.10.13.
위 원	김 광 수	건축사사무소 장인 대표	2018.12.12.
위 원	박 기 관	상지대학교 교수	2021.10.13.
위 원	신 태 민	연세대학교 교수	2021.10.13.
위 원	임 성 희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2021.10.13.
위 원	정 도 성	법률사무소 도성 대표	2021.10.13.

### 3

## 위원회 기능 및 권한

###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는 의회 및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위원회

#### 가. 주요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불합리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 권고
- 위원회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권고, 의견표명 등의 내용의 공표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 장기 미해결 다수인 민원 자문요청 시 조정 및 심의
-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나. 주요 권한

- 민원 조사를 위한 설명, 자료 제출 등 요구 권한
- 권고 및 의견표명 권한
-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권한
- 감사의뢰 권한

## 4

## 고충처리위원회 주요 활동

### □ 위원회 주요활동

#### 가. 위원 전문상담 운영(위원 순번제 실시)

- 근무일시: 매주 수요일 14:00~17:00
- 근무내용: 업무 관련 전문상담 및 고충민원 발굴

#### 나. 위원회 정례회의 개최(매월 1회)

- 2020.09.18. : 2020년 9월 정례회의(7~8월 운영경과보고 및 민원처리)
- 2020.10.16. : 2020년 10월 정례회의(9월 운영경과보고 및 민원처리)
- 2020.11.20. : 2020년 11월 정례회의(10월 운영경과보고 및 민원처리)
- 2020.12.18. : 2020년 12월 정례회의(11월 운영경과보고 및 민원처리)
- 2021.01.29. : 2021년 1월 정례회의(12월 운영경과보고 및 민원처리)
- 2021.02.19. : 2021년 2월 정례회의(1월 운영경과보고 및 민원처리)
- 2021.03.05. : 2021년 3월 정례회의(2월 운영경과보고 및 민원처리)
- 2021.04.09. : 2021년 4월 정례회의(3월 운영경과보고 및 민원처리)
- 2021.05.07. : 2021년 5월 정례회의(4월 운영경과보고 및 민원처리)
- 2021.06.04. : 2021년 6월 정례회의(5월 운영경과보고 및 민원처리)
- 2021.07.02. : 2021년 7월 정례회의(6월 운영경과보고 및 민원처리)

5

위원회 주요 활동 사진



【고충처리위원회 정례회의】



【위원 전문 상담 운영】



**【관부면 고충민원 현장 방문】**



**【불법 건축물 관련 민원 상담】**



**【임기만료 위원 감사패 수여】**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6

# 민원 처리 절차

### 가. 신청방법

- 누구든지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전화·FAX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

### 나. 조사방법

- 일반적인 민원에 대하여 즉시 처리
- 위원회에 의결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의·의결
- 관계부서에 부서의견 및 관련자료 등 제출 요구
- 관계부서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 조사사항과 관계있는 장소, 시설 등에 대한 현장 실지조사

### 다. 조사결과 처리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권고,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견표명
-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권고 하거나 의견표명
-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

-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
-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 확인 및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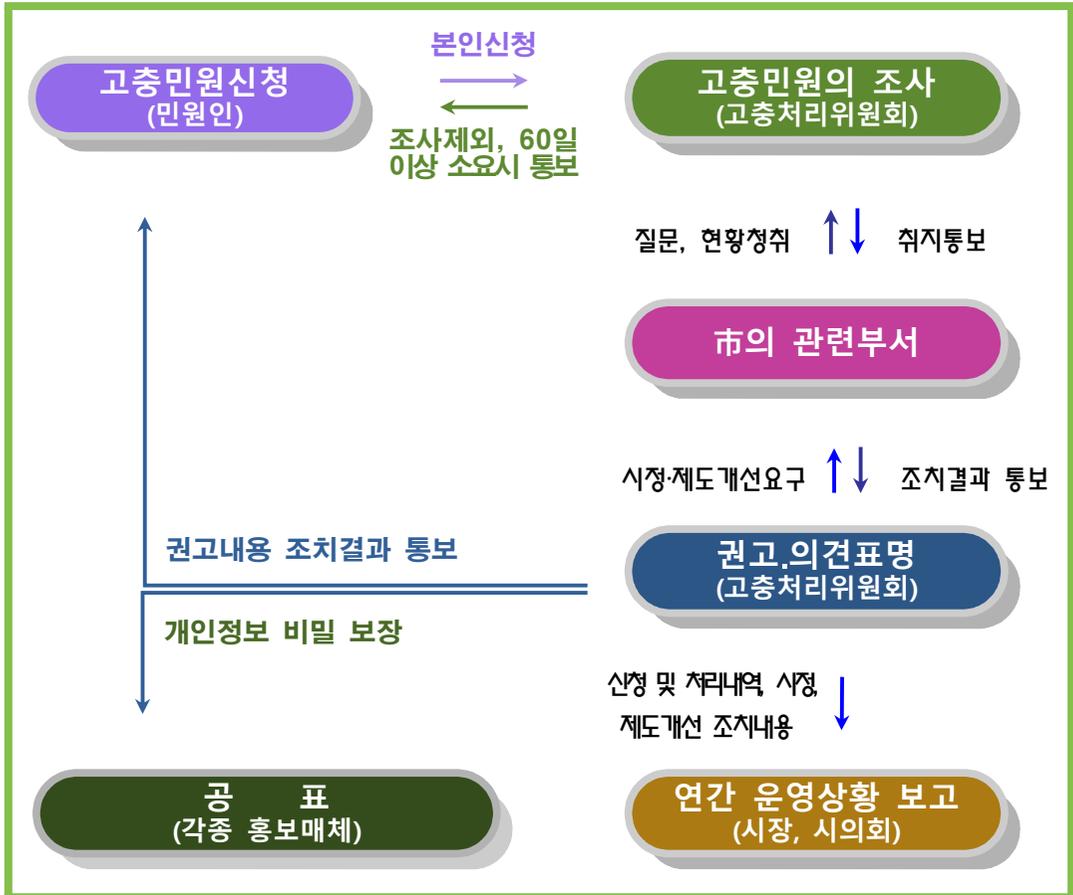
## 라.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등

- 고충민원의 접수현황 및 그 처리결과
-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충민원 처리 흐름도

- 처리기간 : 단순 민원(즉시), 중대한 사안 민원(60일)
- 처리절차



다만, 이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 ☞ 원주시의회에 관한 사항
- ☞ 수사·감사 중, 종결 처분된 사항
-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 사인 간의 권리관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 행정기관의 직위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 사항

## 7

##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 가. 민원 접수처리 실적

(단위: 건)

연 도	민원 접수 건수	처 리 현 황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단순 종결	이첩	안내	기각/ 취하	각하
2009	301	4	0	101	-	83	64	43	6
2010	360	16	5	105	-	124	91	19	0
2011	937	4	0	110	332	223	259	9	0
2012	739	2	24	20	185	321	187	0	0
2013	560	0	5	9	204	224	118	0	0
2014	443	0	2	15	338	57	30	0	1
2015	364	1	8	0	233	49	73	0	0
2016	286	0	1	6	126	59	93	0	1
2017	210	0	2	6	137	6	57	0	2
2018	206	0	3	3	154	31	12	0	3
2019	168	1	0	0	132	15	3	3	14
2020	126	1	2	0	114	4	0	2	3
2021. 7.	52	1	0	0	49	1	0	0	1
합계	4,752	30	52	375	2,004	1,197	987	76	31

## 나. 지난 1년 민원 처리 현황('20. 7. 20. ~ '21. 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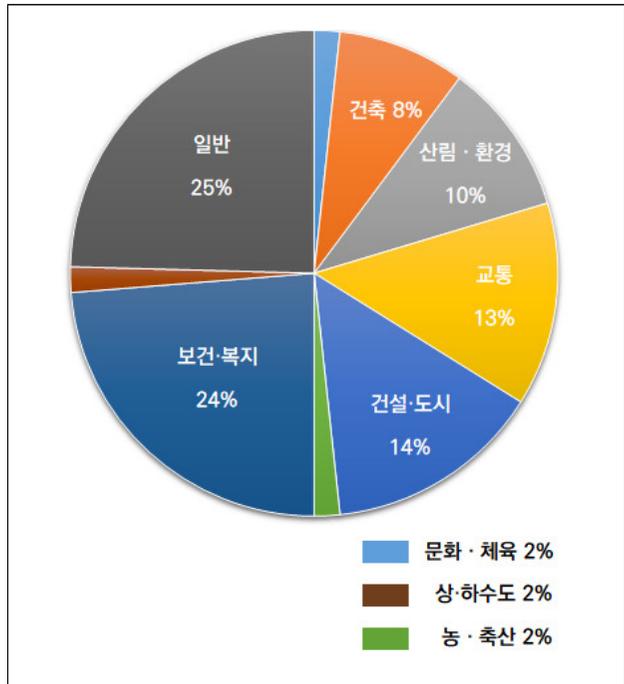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년간 118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다.

접수민원 총 118건 중 보건·복지 분야가 28건(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도시 분야 17건(14%), 교통 분야 16건(13%), 산림·환경 분야 12건(10%), 건축 분야 10건(8%), 문화·체육 분야 2건(2%), 농·축산 분야 2건(2%)이 처리되었으며, 공무원의 태도 및 타 기관 업무소관 일반 민원이 29건 처리되었다.

### 1) 민원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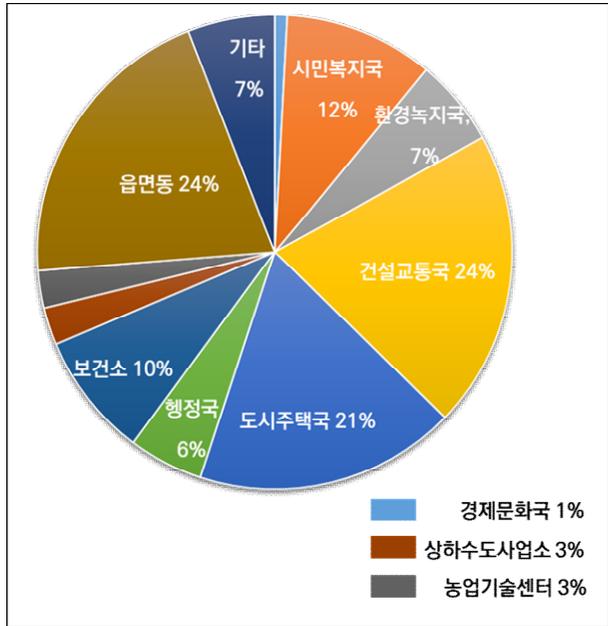
#### ○ 분야별 현황

구분	건수	비고
계	118	
문화·체육	2	2%
건축	10	8%
산림·환경	12	10%
교통	16	13%
건설·도시	17	14%
농·축산	2	2%
보건·복지	28	24%
상·하수도	2	2%
일반	2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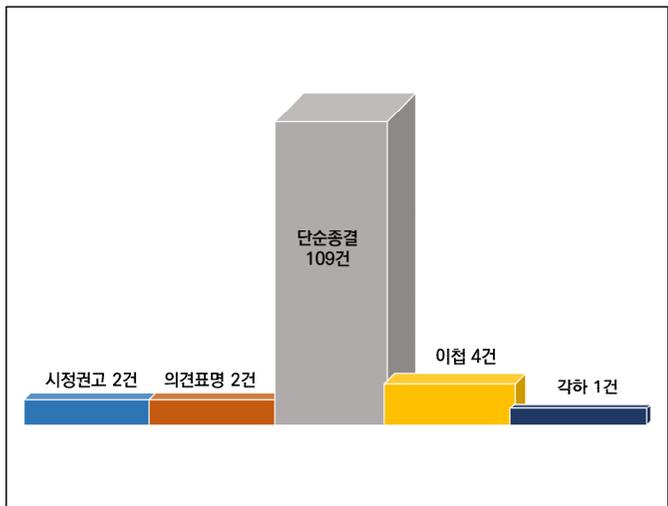
○ 기관별 현황

구분	건수	비고
계	118	
경제문화국	1	1%
시민복지국	12	10%
환경녹지국	7	6%
건설교통국	24	20%
도시주택국	21	18%
행정국	6	5%
보건소	10	8%
농업기술센터	3	3%
상하수도사업소	3	3%
읍면동	24	20%
기타	7	6%



○ 처리내용별 현황

구분	건수	비고
계	118	
시정권고	2	
의견표명	2	
단순종결	109	
이첩	4	
기각	-	
각하	1	



○ 부서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처리 내용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단순 종결	이첩	기각	취하	각하
계	118	2	2	0	109	4	0	0	1
경제진흥과	2				2				
복지정책과	2				2				
생활보장과	4				4				
경로장애인과	3				3				
여성가족과	2				2				
기후에너지과	2				1	1			
공원녹지과	1				1				
환 경 과	3				3				
생활자원과	3				3				
안전총괄과	1		1						
건설방재과	7				7				
도로관리과	3				3				
교통행정과	3				3				
대중교통과	9				9				
도시계획과	2	1	1						
도시재생과	2				2				
신속허가과	7	1			6				
건 축 과	3				2				1
주 택 과	1				1				
토지관리과	5				5				
혁신기업도시과	1				1				
세 무 과	4				4				
정보통신과	1				1				
건강체육과	1				1				
보 건 소	10				10				
농업기술센터	2				2				
상하수도사업소	4				4				
읍·면·동	24				22	2			
타기관	6				5	1			

## II

## 주요 고충민원 접수 · 처리 사례





# 1

## 개발행위 허가 승인 요청

### □ 민원내용

- 수암리 산000번지 외 0필지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해당부지는 개발 행위허가 기준에 부합되는 토지로서 사전 환경성 검토 등 대행업체와 사전 시행에 필요한 보완사항도 마련하였음.
- 그럼에도 절·성토 능선 부근까지 임야가 훼손되고 부지가 기형적이 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인 입장에서 납득이 되지 않아 해당부서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재신청 조차 받아주지 않음.

### □ 처리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도시계획과)
  - ⇒ 안전 심의 결과에 대하여 부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부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 시정권고(신속허가과)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 라인에 맞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확한 문제점 제시 없는 정성적 판단 자제, 정성적 평가요소 반영 자제 등)
  - ⇒ 별도의 보완 없이 원안대로 개발행위에 대한 재신청 자체를 반려 하지 말 것

## 2

## 사전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 □ 민원내용

- 문막읍 동화리 0000-00번지에 대한 사전 개발행위로 토사 유출, 배수시설 미비, 건축물 건립 시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 발생 우려가 크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 □ 처리결과

- 도시계획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으므로 사후 추인(개발행위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의 절차안내를 한 것으로 파악됨.
- 사후 추인에 대하여 따로 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며, 이미 인접한 토지 소유주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매우 곤란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사후 추인이 행정 선례로 남지 않도록 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함.

### 3

## 폐기물처리업체 설치 반대 요청

### □ 민원내용

- 공해, 소음, 재산권 침해, 농산물 판매 유통 과정 유지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므로 폐기물처리업체 마을 설치를 반대함.

### □ 처리결과

- 관련법상 요건을 갖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원주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지역주민들의 폐기물처리업체 설치 반대 이유를 참작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인허가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함.

### 4

## 전입신고 관련 행정절차 위법성 조사 요청

### □ 민원내용

- 양모가 자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전 세대주인 부의 확인 없이 자가 전출된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민원 제기함.

### □ 처리결과

-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실제 거주여부 등을 사실조사 하였고, 전입대상자를 전입지에서 직접 만나는 등 실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전입신고를 처리한 것에 위법성이 없다고 본 위원회로 답변함.

5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5인승 일반화물자동차로 대·폐차 합법 여부 문의**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 제3조제2호(승차정원이 3명 이하일 것) 규정을 근거로 5인승 일반자동차로 대폐차가 위법함을 주장함.

□ **처리결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화물자동차는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밴형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물품적재장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은 것과 승차정원이 3명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는 밴형 화물자동차에만 구조요건으로 승차정원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결이 났으며, 대법원에서는 화물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지 아니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고, 그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새로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사업용으로 자동차등록을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밴형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대폐차 금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법제처 회신 내용에서도 밴형 화물자동차를 동일한 용도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를 대폐차로 인정하고 있음.

## 6

### 우산동 신일유토빌 아파트 앞 개천 악취 해결 요구

#### □ 민원내용

- 원주시 우산동 신일유토빌 앞 개천의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주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함.

#### □ 처리결과

-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속적인 민원 발생 지역의 경우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도 있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악취 발생이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 해당부서에서 악취는 단기간 해결이 아닌 장기간 지속적 관리 및 점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본 위원회로 답변함.

## 7

#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소음·분진 신고

### □ 민원내용

-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공사현장 지도감독을 요청함.

### □ 처리결과

- 해당부서에서는 시공사 측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살수차 가동 및 수조식 세륜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해 저소음 장비(유압식) 및 에어매트 등을 추가 설치토록 지시함.
- 또한 공사로 말미암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공사현장을 지도·점검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소음 방지시설 조치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소음민원 발생시 민원인 부지 경계선에서 소음 측정을 실시할 예정임을 답변함.

## 8

### 문막읍 00길 일원 하천·도로 부지 무단 점용 신고

#### □ 민원내용

- 문막읍 000길 일원 하천·도로부지에 불법건축물 및 축사 등이 무단 축조되어있고 주민 통행을 방해하고 있음.

#### □ 처리결과

- 해당부서 현장점검 결과 도로 및 하천부지 내 일부구간은 점용허가 등을 받고 사용 중이나, 그 외 구간에서는 무단 경작 및 조립식 농막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명확한 지적 구분을 위해 측량 실시 후 공유수면(하천) 및 도로에 무단 설치된 구조물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함.

## 9

### 코로나19 확진 환자 동선 공개 요청

#### □ 민원내용

- 원주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동선 공개를 상세하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함.

#### □ 처리결과

- 법령으로 규정된 범위내에서 환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며, 확진자 동선을 모두 공개 시 사생활 침해 및 지역경제 위축 등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답변함.

## 10

### 반곡동 00번지 건축공사 불법행위 신고

#### □ 민원내용

- 반곡동 00번지 건축물 축조공사 간 옹벽이 기존 허가사항(2m)보다 높ی 축조되었으며 해당 건축에 따른 교통시설물(반사경)이 설치되어 교행 차량의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됨으로 철거를 요청함.

#### □ 처리결과

- 높이 2m 이상의 옹벽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담당부서 확인 결과 옹벽의 높이가 허가대상에 포함되므로 당초 건축물 사용 승인 높이인 1.4m로 낮추도록 원상회복 명령할 계획임을 답변함.
- 해당 건축물 축조공사에 따라 설치된 교통시설물(반사경)은 불법 설치된 시설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교행 차량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민원인 및 건축주와 협의하여 적정 위치 및 각도 조정할 예정임을 답변함.

# 11

## 상수도 요금 체납액 승계의 부당함

### □ 민원내용

- 문막읍 취병리 ○○번지에 미등기의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었으나, 건물 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이 발생하였는데, 체납액이 토지 소유자인 종중의 대표자로 승계됨.

### □ 처리결과

- 수도요금 징수대상은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수도물의 공급을 받은 자,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제1항에 시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도요금 징수대상은 토지 소유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아닌 사망한 건물 소유자로 판단됨.
-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건물 소유자(무연고자)의 체납금 승계자가 부존재함에 따라 수도요금 결손처리함.

## 12

## 거북섬 진입시설 설치 요청

### □ 민원내용

- 홍업면 매지리 일원 저수지 내 거북섬에 진입할 수 있는 교량 등을 설치 요청함.

### □ 처리결과

- 거북섬으로의 교량은 사유지인 연세대 토지 내에서 설치하여야 사업비 절감 등 사업효과가 있음.
- 사유지인 연세대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지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므로 진입로 설치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원주지사로 문의 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함.

## 13

### 만중역 일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

#### □ 민원내용

- 여러차례 당직실 유선전화를 통해 관련 민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회신받은 바가 없을 뿐 아니라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함.

#### □ 처리결과

- 해당부서에서 1일 1회 이상씩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만성적인 불법주정차 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본 위원회로 답변함.

## 14

### 교항리 석조불두 관리 철저 요청

#### □ 민원내용

- 교항리 석조불두 QR코드 오류에 대하여 1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재차 본 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함.

#### □ 처리결과

- 부서확인 결과 해당부서에서 1차 민원 접수 후 바로 문화재 안내판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문화재 안내판 QR코드의 절대 공정 제작기간의 소요로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안내해드림.

## 15

### 지적 재조사에 따른 조정금액 및 납입기간 조정 요청

#### 민원내용

- 지적 재조사로 발생된 조정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 금액 및 납입기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 처리결과

- 조정금액은 2곳의 감정평가를 받아 책정된 금액으로 시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납입기간은 1천만 원 이상인 금액에 한해서 1년 동안 4회에 걸쳐 분납 가능성을 안내함.

## 16

### 장애인 경사로 설치 요청

#### 민원내용

- 원주천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데 장애인 경사로가 너무 먼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는데 불편하여 민원인이 거주하는 인근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처리결과

- 장애인 경사로 설치는 예산이 선행되어야 함을 설명해 드렸으며, 해당부서에 본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추후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함.

## 17

###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 요청

#### □ 민원내용

- 치악로 ○○○ 앞 전봇대에 몇 년째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으나, 민원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도 무단투기 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 처리결과

- 해당 부서에서는 경고 안내판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출장하여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이동식 CCTV를 추가 설치하였음.



### Ⅲ

## 부 록

1. 전국 지방옴부즈만 운영 현황

2.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법규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체)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체)

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01 전국 지방옴부즈만 운영 현황 (21.10.)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	경기도	옴부즈만	10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7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1회)	합의제	
8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	서울 (14)	종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0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1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12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3		도봉구	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4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5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	합의제
16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7		양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18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19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0		동작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1		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2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23	대구 (2)	동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4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4년(1회)	합의제
25	인천	미추홀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6	광주 (2)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7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8	대전	대덕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29	울산 (3)	남구	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0		북구	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1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2	경기 (17)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3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 (연임제한)	의사결정		
34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5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6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7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38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9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0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41		군포시	기업애로 옴부즈만	공석	2년(1회)	합의제	
42		하남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3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4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5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2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6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7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8		여주시	옴부즈만	재위촉중	4년(단임)	합의제	
49		강원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6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0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1		충북 (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2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8명(비상근)	4년(단임)	독임제
53	충남 (3)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4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55		부여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6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7	전남 (4)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8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9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6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0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1	경북	상주시	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62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 02 고충처리위원회 관련 법규

###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 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 기관 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 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췌)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 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2008.12.31. 조례 제828호  
 일부개정 2015.01.02. 조례 제1368호  
 전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575호  
 일부개정 2017.10.11. 조례 제16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다수인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3. “공공갈등”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법규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2. 주민이 신청한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3.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4.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의 결과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5.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홍보
7.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권익 구제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고, 위원 중 1명은 상근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고충민원등의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⑥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원주시 소속 행정기관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6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 권고: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합의 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6.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각: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 각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이첩: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10. 심의안내: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상근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고, 보수는 일반직공무원 4급 1호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6조(조사공무원)**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우대 조치를 마련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12.30.,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7.10.11.,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라.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07.17	규칙	제479호
일부개정	2011.06.17	규칙	제532호
일부개정	2013.12.13	규칙	제607호
일부개정	2015.10.08	규칙	제673호
전부개정	2018.04.13	규칙	제7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근위원 업무)**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상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공공갈등조정(이하 “민원”이라 한다) 신청의 접수, 안내 및 조사 업무처리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3. 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에 관한 처리
4.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 및 처리결과 등의 사후관리
5. 민원 신청에 필요한 편람 비치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

**제3조(상근위원 보수)** ① 상근위원에게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본급과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정근수당
2. 정액급식비
3. 명절휴가비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위원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원신청·접수)** ① 누구든지(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위원회에 원주시 소속 관계 부서(이하 “관계 부서”라 한다)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를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보완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1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하 “접수된 민원

“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민원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신청의 대리 및 대표자 선정 등)**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제5호에 해당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민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7조(관계 부서 이첩)**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계 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이첩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민원은 이첩된 때에 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신청취하)** ①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② 대표자가 취하할 경우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 ④ 공공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반복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부서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 2. 관계 부서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 3. 현지조사
- 4. 감정의뢰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부서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민원조사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 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민원조사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 ③ 관계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합의)**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제16조(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제17조(의결서)** ① 의결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한다.

- ②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8조(의결내용 통지)**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표명서로서 소속 관계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결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신청인, 관계 부서,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결과 통보 등)** ① 관계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 ② 관계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의뢰)**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통보한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2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당 등)**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조사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4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제2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3., 제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1년도 운영보고서

2021년 11월 인쇄

2021년 11월 발행

발행처	원주시 고층처리위원회
운영위원	위원장 강응만 부위원장 박인광 위원 신태민, 정도성, 박기관, 임성희, 김광수
담당공무원	감사관실 김경섭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원주시청 9층
전화	033) 737-2198~9
팩스	033) 737-4995